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

- UECIC 규정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Legal Study on Complimentary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Act in Korea

저자 (Authors)	심종석 Chong-seok Shim
출처 (Source)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9(3) , 2009.9, 337-363 (27 pages)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9(3) , 2009.9, 337-363 (2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Korea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266126
APA Style	심종석 (2009).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9(3), 337-363.
이용정보 (Accessed)	대구대학교 203.207.31.89 2015/11/26 12:5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 - UECIC 규정내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Complimentary Issues of Electronic Commerce Act in Korea

심 종 석*

Chong-seok Sh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보완과제 |
| II.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제·개정 이유와 구성체계 | I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i. e. transaction) are consist of chap. 8 and art. 46(2009. 05. 22).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by clarifying the legal concern and ensuring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transaction as well as establishing the framework so as to improve of electronic transactions. The definitions of terms used in this act shall be electronic message shall mean information which is generated, sent, received or stored in a kind of electronic form by using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In this cas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shall mean electronic devices or systems which have an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to be utilized for the generation, transmission, reception or store of electronic messages. I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is act so that electronic commerce shall mean a transaction of goods or services the whole or part of which is made by using an electronic message. Furthermore the scope of this act tha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any other act or subordinate statute, this act shall apply to all electronic commerce(transaction) using electronic mess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al with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erce(transaction), legal effect of electronic message, electronic communications of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so on.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경영학박사·법학박사)

Key Words: The Act on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Transaction, Electronic Message,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utomated Message System.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의 시의적 급진전은 당해 상관습의 변화는 물론, 국내·외 실정법상의 체계를 수시로 변모케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1990년도 후반 웹의 출현으로부터 고도화의 추세로 진전된, 이를테면 전자상거래 핵심기축으로서 정보처리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이하 'IPS'로 약칭한다)은 초창기 상인간 상거래 자료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였으나, 불과 수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는 주지하듯 그 자체가 '상거래 활동의 목적'(subject matter of the commercial activity) 내지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법적 시각에서 살피기에, 당해 상거래계로부터 확립된 상관습은 법적 확신에 기한 체계화의 과정이 여타 분야와는 사뭇 다른 과정으로 전개되었거나 또는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다수의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랫동안 확립'(long established)되어 왔거나 혹은 '옛 것'(ancient)이어야 한다(Honnold, 1999)는 엄격한 제한을 철저히 배격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곧 당해 상관습의 체계화가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무쌍한 급진전에 기인하였음을 함의한다.

한편으로 법적 확신에 기한 상관습의 체계화는 전통적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의 경화현상(hardship)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였는데, 그 배경은 종이문서(paper-based document)를 기반으로 전통적 상거래에서는 고려할 수 없었던, 예컨대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utomated message system : 이하 'AMS'로 약칭한다), 전자계약(electronic contracts) 등의 상용화에 기인한다(北川善太郎, 2002).

이상의 개념들은 그간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 관한 새로운 법규범을 제정하는 동인이 되었거나, 달리 기 제정된 법규범에 대한 개정 및/또는 보완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던 바, 이하 본 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 2009.03.18, 법률 제9504호 : 이하 '동 법'이라 약칭한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입법연혁에 비추어, 동 법은 1999년 02월 법률 5834호로 공포되어 그간 총 18차에

결쳐 전면 또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입법취지에 의하면 동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¹⁾

동 법의 제·개정에 따른 이유는 요컨대 전자적 통신수단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법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었는데, 당해 제·개정과정은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법기능적 차원에서 피치 못할 과정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예컨대 전자문서의 개념, IPS의 정의, 송·수신자의 특성과 당사자의 법률관계, 전자문서 송·수신시기 및 장소 등이었다(최준선, 2001).

그런데, 한편으로 동 법은 국제상사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이하 ‘UNCITRAL’이라 약칭한다)에 의해 성안된 소위 ‘국제계약에있어전자적의사표시의이용에관한UN협약’(UN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 이하 ‘UECIC’라 약칭한다)의 제정으로부터 또 다시 국제적으로 법적 조화 내지 안정성 차원에서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²⁾

본래 전자거래기본법은 선천적으로 UNCITRAL이 1996년에 공표한 ‘전자상거래에 관한UNCITRAL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이하 ‘UNCITRAL 모델법’이라 약칭한다)이 토대가 되어 마련된 입법연혁을 보유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 내지 조화의 관점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될 수 있는 기본 법리를 수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³⁾

이후 우리나라는 당해 기본 법리에 충실하고 제반 승인요건을 수용하기 위한 취지에서, 전자상거래를 통일된 국제법규범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는 최초의 협약으로서 그 법적 지위를 담보하고 있는 UECIC에 2008년 01월 15일 부 공식 서명하였는 바, 그 특징에 비추어 전자거래기본법과 UECIC의 비교법적 고찰은 매우 긴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 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성과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본 연구결과는 관련 사안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선행연구로서 소기의 파급효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한 고도의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가 UECIC에 대한 체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차제임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합목적

1)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1189), 2001. 11. 22.,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산자위, 2001. 12.

2)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Annex I. 제정취지에 관한 상세는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s. 75, 81.

3)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I, E.

성 내지 안정성에 기초하여 동 법에 대한 법적 보완과제를 추론하여 이를 명료히 할 수 있음은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실무계 뿐만 아니라 학계간 유관분야에서의 후속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및 구성체계

본 고는 현행 동 법이 UECIC와 비교하여 어떠한 법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설령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또한 당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아울러 관련 사안별로 경우에 따라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그 지위를 표창하고 있는 UECIC 또한 동 법에 비추어 어떠한 법적 의의를 내재하고 있고,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선도적 입법례에 걸맞게 본래의 제정취지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까지 지평을 넓혀 이를 본 고의 연구범위로 수용하고자 한다.

이로부터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동 법의 법리 및 규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별법규범의 실무적용상 폭을 건설히 확장함과 동시에 국내·외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동 법의 제정취지에 기한 이해를 실효성 있게 담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곧 동 법의 경우 그간의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현행 동 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UECIC 경우에는 UNCITRAL 공식문서, 기관지, 심의안 등을 포함하여 이에 제반 국내·외 선행연구결과를 결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고는 현행 동 법의 규정내용을 검토·평가하고, 그 시사점 및 유의점에 관한 법적 함의를 명료히 추론하여, 실무계를 향하여 동 법 적용상 예상치 못했던 법적 문제점 및 장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 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또한 참여를 의도하고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추구하는 바, 그 이해를 적의 보전할 수 있는 법적·상학적 기반제시에 목적을 두었다.

구성체계는 우선 현행 최종안의 주요 내용과 규정체계를 명료히 이해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간 동 법의 주요 제·개정 연혁을 그 사유와 함께 평가하고, 이로부터 현행 동 법의 입법상 불비 내지 보완과제를 추론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입법적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적 보완과제에 기한 장애 내지 문제점 등은 제반 UECIC를 포함, 제반 국제법규범을 결부하여 그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는 연구의 방법과 목적에 기한 전례에 준한다.

Ⅱ.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제·개정이유와 구성체계

1.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취지와 그 내용

제정 당시 동 법은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소비자의 보호·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계 당사자가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아울러 이를 촉진하고자 함에 제정취지를 두었다.⁴⁾

제정취지에 기한 동 법의 주요 골자는 첫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종이문서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및 제6조).

둘째, 전자거래 당사자 등이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13조).

셋째,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였다(제16조 및 제17조).

넷째,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9조 내지 제21조).

다섯째,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외 조사연구 등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제22조 및 제28조).

여섯째,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의 적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29조 내지 제32조).

2. 전자거래기본법의 제·개정이유 : 사안별 주요 쟁점과 관련

4)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8222), 산자위, 2008. 02.

1)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의한 규정정비(법률 06614호, 2002.01.19)⁵⁾

(1) 개정이유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 제정 이후 동 법이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과 동시에,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전자거래의 확산 및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취지를 두었다.

(2) 주요 내용

첫째, 전자문서의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에서 전자문서가 송·수신된 것으로 보았으나, 동 개정으로부터 그의 상거소에서 전자문서가 송·수신된 것으로 보는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에 관한 사항과 수신확인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이에 따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다(제6조, 제7조 및 제9조).

둘째, 전자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6조 및 제18조).

셋째, 정부로 하여금 전자거래촉진을 위해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규제 최소화,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체계 내에 이를 수용하였다(제19조).

넷째, 관계기관으로부터 전자거래에 관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대학·연구소·민간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6조).

다섯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은 그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제27조), 당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분쟁조정절차,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32조 내지 제38조).

5)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산자위, 2001. 12.

2) 전자문서 관리체계 정비(법률 07440호, 2005.03.31)⁶⁾

(1) 개정이유

전자문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가 요구되어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등을 수행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 전자문서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문서의 기록·보관·비치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개정이유를 두었다.

(2) 주요 내용

우선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 확대(제4조제2항 및 별표 신설) 및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작성·보고 등의 행위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주요 법률의 구체적 조문을 일괄하여 규정하였다.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를 도입(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14),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발급하는 증명서의 진정성에 대한 추정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의 정보보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배상책임 및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규정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3) 전자문서의 보관요건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법률 08461호, 2007.05.07)⁷⁾

(1) 개정이유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 보관의무를 전자문서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주요 내용

첫째, 전자문서 보관요건의 보완(제5조)과 관련, 전자문서 중 종이문서 등을 스캐너를 통하여 IPS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화문서에 대

6)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산자위, 2005. 02.

7)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산자위, 2007. 04.

하여는 그 내용과 형태면에서 전자화 대상문서인 종이문서 등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정기점검제도 도입(제31조의8제4항 및 제31조의10)과 관련,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등을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후에도 시설·장비의 적절성에 대하여 외부의 지속적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에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장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영업양도·합병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법 제31조의14 신설)에 대해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문서의 계속적 보관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제기되어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그 기준을 명료히 하였다. 한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영업폐지 시 보관문서 인계제도(제31조의15)를 두어,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관문서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4) 전자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의 강화(법률 08932호, 2008.03.21)⁸⁾

법률 08932호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동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해제 등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토록 명시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보호 및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에 대한 기준을 명료히 제시하였다.

이상의 내용이 그간 총 18차에 걸쳐 이루어졌던 동 법의 주요 제·개정 이유로서, 여타 차수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제·개정사유 요약

차수	개정사유	주요 내용	관련 조문
※	전자거래기본법제정(1999.02.08)		
01	전자거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정비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사항보완	제6-9조, 제16조 등
0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도입	전자문서 관리체계 정비	제4조, 제31조 등

8)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자위, 2008. 02.

03	공무원 직제의 개편	기구변경	타 법률 부칙수용
04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를 강화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명문화	
05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문장 개편	복잡한 법문장체계를 재정비	동 법의 전 조문
06			
07	통계의 작성·보급에 따른 제도개선	통계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제공	타 법률 부칙수용
08	종이문서 보관의무 전자문서와 동일시	전자문서 보완요건의 보완	제5조, 제31조 등
09	총량관리의 실시	총량관리 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타 법률 부칙수용
10	불필요한 규제철폐 포괄감독조항 삭제	조합의 자율적 운영기반 확립	
11	정부의 전략기획기능 강화	정부부처의 조직개편	
12	소비자 권리보호 합리적 절차보완	불명확한 행정처분 요건 등 명확히 제시	제8장
13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문장 개편	복잡한 법문장체계를 재정비	동 법의 전 조문
14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의 적용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허용	제45조
15	질서유지행위의 성립요건의 필요성	관련규정 재정비	타 법률 부칙수용
16	책임행정체제 확립	전자거래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폐지	관련 조문 삭제
17	정보화 촉진을 위한 환경변화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제시	타 법률 부칙수용
18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	정보통신산업 진흥 지원	제5조, 제13-14조 등

2.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체계와 주요 내용

1)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체계

총 8장 46조로 구성된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제09708호, 2009.05.2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은 동 법의 목적과 전자거래, IPS 등 개념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해 다루고 있다(제1조-제3조). 제2장은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과 보관 및 IPS에 의한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나아가 송·수신자간의 법적 지위와 약정에 의한 변경 및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서명법(제8852호, 2008.02.29)을 명시하고 있다(제4조-제11조). 제3장은 전자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차례로 개인정보보호의 준수기준, 영업비밀보호 및 암호제품의 사용에 대한 요건,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과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과 인증요건 등을 명문으로 수용하고 있다(제12조-제18조). 제4장은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당해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전자거래진흥전담기관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22조). 제5장은 전자거래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전자거래에 관한 표준화·기술개발의 추진·전문인력의 양성·국제화·촉진지원책 등을 다루고 있음과 동시에 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및 통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기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및

타 법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3조-31조). 특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지정·결격사유·시정명령·지정취소 및 과징금을 포함, 동 보관소에 있어 전자문서에 관한 보관대행의 효력·내용의 추정·신고 내지 준수사항·보고 및 검사·정보보안 등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제31조의2-17). 제6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제32조-38조), 제7장과 제8장은 보칙(제39조-제42조)과 벌칙(제43조-4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전자거래기본법의 구성체계

장 별	조문 별	규 정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및 적용범위(제3조) 등.
제2장 (전자문서)	제4조 내지 제11조	전자문서 효력(제4조), 전자문서 보관(제5조), 전자문서 송·수신시기·장소(제6조), 작성자의 송신으로 간주(제7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제8조), 수신확인(제9조), 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제10조),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제11조) 등.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확보 및 소비자보호)	제12조 내지 제18조	개인정보보호(제12조), 영업비밀보호(제13조), 암호제품의 사용(제14조), 소비자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등(제15조), 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제16조),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제17조),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제18조) 등.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수립)	제19조-제22조	전자거래기본정책 원칙, 정부책무(제19조), 전자거래촉진계획수립·시행(제20조), 삭제(제21조)*, 전자거래진흥기관(제22조) 등.
제5장 (전자거래 촉진 및 기반조성) [제5항의2]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23조-제31조	전자문서 이용촉진 등(제23조), 전자거래 표준화(제24조), 전자거래 기술개발 추진(제25조),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제26조), 공공부문 전자거래 추진(제27조),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제28조), 전자거래 국제화(제29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제30조-제30조의2),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지원(제31조) 등.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32조-제38조	설치·구성(제32조), 분쟁조정(제33조), 자료요청(제34조), 조정성립여부(제35조-제36조), 조정비용(제37조), 위원회운영(제38조) 등.
제7장 (보칙)	제39조-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제39조), 상호주의(제40조), 청문(제41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제42조) 등.
제8장 (벌칙)	제43조-제46조	벌칙(제43조-제44조), 양벌규정(제45조), 과태료(제46조) 등.

2) 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내용 : 연구논점의 대상과 관련

동 법은 정의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IPS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

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이 경우 IPS는 전자문서의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한편 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거래로 명시하고는 있으나(제2조 제5호), 달리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규정(제30조)에서는 달리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8635호, 2007.08.03 : 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으로 약칭한다)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동 법에서의 전자거래와 같은 개념으로 의제하고 있기도 하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호).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해서는 당해 문서가 타 법률에 특별한 제한요건이 존치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것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서는 아니 된다(제4조 제1호)고 하고, 전자문서가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송신·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작성자 및 수신자 그리고 송·수신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다면 당해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제5조 제1항).

또한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소위 전자화대상문서를 IPS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소위 전자화문서가 공히 그 내용과 형태가 동일하며(제5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제5조 제2항 제2호), 이상의 각 호를 공히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에 관하여는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IPS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보고(제6조 제1항), 아울러 수신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은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IPS를 지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지정된 IPS에 입력된 때(제6조 제2항 제1호)로, 후자의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IPS에 입력된 때(제6조 제2항 제2호)로 두고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전자문서가 지정된 IPS가 아닌 또 다른 IPS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로 하여 일부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신 또는 수신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영업소가 복수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가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수신된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 제3항).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간주되는 요건은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의하며(제7조 제1항), 이때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는 경우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한하고 있다(제7조 제2항). 다만 제한요건은 수신자가 작성자로부터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제7조 제3항 제1호)와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수신자가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제7조 제3항 제2호)에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있다(제8조).

전자문서의 수신확인 요건은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제9조 제1항), 작성자가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수신확인 통지를 요구한 경우 상당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한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작성자가 수신확인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제2항).

3)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 연구논점의 내용과 관련

첫째, 동 법 제2조에서는 주요 개념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당해 용어의 적정성 여부를 고려할 때, 문제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전자거래와 IPS 및 동 법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AMS에 대한 내용이다. 주안점은 전자거래(제2조 제5항)와 전자상거래(제30조), 그리고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의 자구상 불일치에 따른 개념정립 및 이에 따른 실익에 대한 논점이다.

둘째,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UECIC에서 수용하고 있는 등기능성(functional equivalent)의 충족요건과 송·수신시기와 장소에 대한 UECIC와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사항이다.⁹⁾ 곧 동 법이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기하여 국제적으로 승

9)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I, E, F.

인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을 수용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가 논점으로 부각된다(제4조). 아울러 송·수신시기와 장소는 앞서 언급한 AMS가 개입할 경우 동 시스템이 IPS에 의제될 수 있기에 충분한지의 사안으로 귀결되는데, 당해 사안은 달리 전자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제6조-제10조).

셋째, 전자화문서에 대한 요건도 상기 항의 논점과 유사성을 띄고 있는데, 이를테면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구별에 따른 법적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 무리가 있다면, 그 대안으로서 AMS를 정의규정으로 수용할 경우 UECIC와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어떠한 파급효과 있을 것인지가 논점으로 부각된다(제5조).

넷째, 송·수신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적시할 수 있는 사안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electronic communications)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 문제시 될 수 있는 양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점이다. 동 법은 전자문서 외에는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를 규정 내에 수용하지 않고 있어, 그렇다면 UECIC와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합목적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로 귀결된다(제2조-제10조).

다섯째,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정내용을 고려함에 있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의 법적용상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 이는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개념을 아무런 제한없이 혼용하고 있음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제15조-제18조). 당해 사안은 별론으로 한다.

여섯째, 동 법에서는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은 ‘자동화된 의사표시’(automated communications)에 의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UECIC에는 당해 개념 내지 법률효과를 규정 내에 수용하고 있는 차제에 있는 바, 이는 그 실익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동 법으로의 수용을 적의 고려하여야 함을 함의한다(관련규정으로서 제29조 제2항).

Ⅲ.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의 보완과제

1. 전자거래의 정의

1)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전자적인(electronically) 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핵심은 텍스트·소리·비디오를 포함한 데이터의 전자적 처리 및 전송에 기초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이를 배경으로 물품과 용역의 전자적 상거래,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목적물의 온라인 인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자금이체, 전자공유거래, 전자

식 선하증권, 상업적 경매, 합작에 의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온라인 제공, 정부조달, 직접적인 소비자 마케팅 및 사후 보증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서민교, 2008).¹⁰⁾

한편 전자상거래는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법규범에서 대개 ‘electronic commerce’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개별적 규범의 특성 및 형편에 따라 또는 법규범의 제정취지에 따라 그 정의 내지 적용범위는 각양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¹¹⁾ 일례로 OECD나 EU의 경우에는 그 존재의 성격이 WTO, UNCITRAL과는 달리 국가간 통상정책조정이라는 내재된 측면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electronic commerce’를 정부정책·공익보호·각국 간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국가적 차원의 지원·국제적 협력 등을 지향하는 의미로써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¹²⁾

각국간 실정법에서는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가 뚜렷한 구분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나라 실정법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거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동 법 제2조 제5호), 달리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도 있는데(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용어는 상호 동일시 되고 있다.

그간 이 같은 논점에 대한 수차례의 검토와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그 구분의 실익이 미미하다는 주장 내지 의견이 팽배하여 실상 관련 입법안의 상정시에나 심지어 학계에서의 법리적 순수검토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개진이 미약하였다.¹³⁾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구분의 실익에 대한 도외시는 당해 분야의 국제화(동 법 제29조)에 기한 합목적성 및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구분의 실익¹⁴⁾

우선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의 구분은 법률용어에 있어 상거래(commerce)와 법률 행위(transactions)라는 구분을 통해 그 실익을 추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곧

10)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1997, Chap. 1, para. 5. 당해 용어의 구분에 대한 상세는 서민교(2008).

11) 일례로 WTO나 UNCITRAL의 경우에는 국제상거래를 조정하고 규율하는데 근본적인 설립목적을 두고 있는 까닭에, 당해 기구에서 마련한 제반 법규범에서의 ‘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그 적용범위를 국제상거래에 한정하고 전자상거래를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UNCITRAL 모델법’,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1998)’.

12) OECD의 경우 ‘BIAC Declaration of Policy Principles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Guideline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1980)’, ‘Guideline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1992)’, ‘Guideline for Cryptography Policy(1997)’, ‘Guidelin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 (1999)’, EU 경우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1997)’,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2000)’ 등을 참조.

13) 1999년 국제거래법학회로부터 2007년 국제e-비즈니스학회(KINTEX)에까지 유사주제로서 관련논점이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

14) 상거래와 거래의 구분의 실익에 대한 상세는 심종석(2009).

법률용어에 있어 영미법상 법률행위라고 함은 법률이 가치있는 것으로 허용하는 적법 행위 중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 설명되는데, 상용화된 용어로서의 ‘transaction’은 대개 ‘거래’라고 통용되고 있음이 통례이다. 따라서 ‘transaction’은 일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성취하는 등 내용은 여러 가지이지만 대개 타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그 행위의 결과 소로써 이를 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없이 ‘transaction’에 포함된다.¹⁵⁾ 이 경우 상거래라고 하는 의미는 법률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타인에 대한 특징에 있어 그 주체를 일정한 상업적 이해(利害)를 우선시 하고 있는 상인에 국한하여야 할 것이다.

당해 주장은 국가간 상거래에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에 따른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전자거래의 개념과 그 범위는 각각 달리 사용되고 구분되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이는 곧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업[상인]간(B2B)의 상거래는 이를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범위로 포함하고, 달리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로 바꾸어 말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비단 동 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각국의 실정법상에서 소비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경향에 비추어, 무엇보다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국제사법 내지 강행법의 적용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 기업[상인]의 신속·민활한 상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배려하고, 나아가 이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전제할 때, 그 법적 실익이 제고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¹⁶⁾

따라서 동 법의 범명에는 무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만 정의규정에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이는 연관규정(동 법 제30조)에 비추어 자구의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불식시킬 수 있는 단초로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한 그 범명을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으로 개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그 내용은 당해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거래를, 곧 전자상거래로 의제하고 있는 규정을 이 같은 취지에서 삭제하고 동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전자문서의 등기가능성

15) Steven H. Gifis,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p.519.

16) 동일한 시각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국제규범으로서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0)’, L 178/7, paras. (55), (56).

국제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electronic message)가 종이문서(paper-based document)와 동일한 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곧 IPS의 요건으로서 진정성(authenticity) 보장, 당사자 신원확인 및 정보제공 등의 과정에서 종이문서와 동등한 등기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 결과로써 전자문서는 전통적 종이문서에 상당하는 법적 지위의 보장 및 안정적 법 적용에 따른 법적 효력이 보장될 수 있다(심종석, 2004).

일례로 UECIC에서는 동 협약이 기술적 중립성과 등기능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통일적 규정은 당사국이 관련 법률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매체와 기술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각각 상이한 법률·사회·경제제도를 가진 제반 당사국이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의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¹⁷⁾

한편 IPS를 통한 전자문서의 전달과정은 전통적 의사표시의 전달과정과는 사뭇 다른 메커니즘이 구현된다. 이를테면 작성자(originator)가 입력한 자료를 코드화(coding)하고 연산하여 송신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고, 수신된 신호는 수신자(addressee)가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동영상 등으로 재변환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자문서는 단순히 작성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작성자가 기초적 정보만을 제시하면 조작된 연산에 따라 구체적 의사를 형성할 수도 있다. 곧 상거래 과정에서 IPS에 의한 연산이 작성자의 행위와 동시에 반드시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전통적 의사표시에 비하여 의사표시의 전달과정에 따른 실질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법적 접근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계약체결 방식의 변화는 전통적 계약체결에 있어 보통 구두나 서면에 의할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상황을 전자문서 의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수단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의사표시 메커니즘의 변화는 전자문서의 형식요건·효력 및 전자서명에 의한 정보보안 등 새로운 법적 규율을 필요로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같은 취지에서 동 법은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을 공히 보장하고는 있으나(제4조),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form requirement)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인증신청에 있어 일정한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이 경우 적시할 수 있는 논점은 당해 관련 규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제법규범과의 조화의 관점이다. 곧 타 법률에 위임해 둔 전

17) UECIC Preamble, "Being of the opinion that uniform rules should respect the freedom of parties to choose appropriate media and technologies, taking account of the principles of technological neutrality and functional equivalence, to the extent that the means chosen by the parties comply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rules of law, Desiring to provide a common solution to remove legal obstacles to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a manner acceptable to States with different leg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자문서의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당해 법률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은 논의의 여지가 없으나, 다만 적용범위에 기하여 전자문서의 제한요건을 동 법 내에 수용해 두어야 함은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 생각된다.

참고로 UECIC에서는 예외사항으로서 개인적·가족적 또는 가사의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등록된 거래소에서의 거래, 외국환 거래, 은행간 지급시스템 및 은행간 지급약정 또는 담보나 기타 금융자산·증권에 관련한 결산시스템, 매매·대부 또는 점유에 관련된 담보권의 이전 또는 담보성 환매약정이나 기타 중개자를 통하여 간접 보유한 금융자산·증권 등에 대해서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기한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Art. 2, (1)),¹⁸⁾ 나아가 환어음, 약속어음, 양도증서, 선하증권, 창고증권 기타 소지인이나 수익자에게 운송물의 인도 또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양도성 증권에는 공히 제한을 가하고 있다(Art. 2, (2)).¹⁹⁾ 다만 계약당사자 합의에 의해 UECIC상의 효력을 부정 또는 변경하여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을 담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를 조각한다(Art. 3).²⁰⁾

3. 전자문서의 형식요건

UECIC에서는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대하여, 동 협약은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어떠한 특별한 형식으로 작성되거나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Art. 9, (1)),²¹⁾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면 흠결효과를 정한 경우 당해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가 이후의 참조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가능하다면 그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충족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Art. 9, (2)).²²⁾

18) UECIC, Art. 2, (1),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relating to any of the following: (a) Contracts concluded for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b) (i) Transactions on a regulated exchange; (ii)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iii) inter-bank payment systems, inter-bank payment agreements or clearance and settlement systems relating to securities or other financial assets or instruments; (iv) the transfer of security rights in sale, loan or holding of or agreement to repurchase securities or other financial assets or instruments held with an intermediary."

19) UECIC, Art. 2, (2), "This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bills of exchange, promissory notes, consignment notes, bills of lading, warehouse receipts or any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that entitles the bearer or beneficiary to claim the delivery of goods or the payment of a sum of money."

20) UECIC, Art. 3, "The parties may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derogate from or vary the effect of any of its provisions."

21) UECIC, Art. 9, (1), "Nothing in this Convention requires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to be made or evidenced in any particular form."

22) UECIC, Art. 9, (2),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in writing,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writing, that requirement is me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accessible so as to be usable for subsequent reference."

이 경우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당사자에 의하여 서명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서명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당해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당사자의 신원확인 및 전자적 의사표시에 포함된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의도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사용된 경우, 그 사용된 수단이 관련 합의내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전자적 의사표시가 생성 또는 유통되는 목적에 적합할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이상의 기능을 충족하였다는 것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증거와 함께 사실상 증명된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다(Art. 9, (3)).²³⁾

또한 법률이 의사표시 또는 계약이 원본의 형태로 활용 가능하거나, 보존될 것을 요건으로 정하거나, 또는 원본 흠결의 효과를 정한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전자적 의사표시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최종적 형태로 처음 생성된 때부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무결성(integrity)에 관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장이 존재하는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 가능하도록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활용할 사람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를 충족한 것이 된다.²⁴⁾

결국 동 법은 기 언급한 바와 같이 UECIC상의 조문내용을 참조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에 대한 후보규정과 형식요건에 있어 일부 제한요건을 이상의 UECIC에 수용된 관련규정을 근거로 이를 명료히 제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의 신설 또는 제·개정이 요구된다.

4.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와 장소

23) UECIC, Art. 9, (3),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signed by a party,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 signature,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a) A method is used to identify the party and to indicate that party's intention in respect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b) The method used is either: (i) As reliable as appropriate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was generated or communicated, in the light of all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relevant agreement; or (ii) Proven in fact to have fulfilled the functions described in subparagraph (a) above, by itself or together with further evidence."

24) UECIC, Art. 9, (4), "Where the law requires that a communication or a contract should be made available or retained in its original form, or provides consequences for the absence of an original, that requirement is met in relation to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f: (a) There exists a reliable assurance as to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it contains from the time when it was first generated in its final form, a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or otherwise; and (b) Where it is required that the information it contains be made available, that information is capable of being displayed to the person to whom it is to be made available." 여기서 무결성(integrity)의 판단기준은 UECIC, 제9조 제5항에 의한다. UECIC, Art. 9,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4 (a): (a) The criteria for assessing integrity shall be whether the information has remained complete and unaltered, apart from the addition of any endorsement and any change that arises in the normal course of communication, storage and display; and (b) The standard of reliability required shall be assess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for which the information was generated and in the light of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UECIC상 전자적 의사표시 송신시기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작성자(송신자) 또는 작성자를 대리하여 송신하는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는 IPS를 떠난 때부터,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가 송신자 내지 송신자 대리인의 통제 하에 있는 IPS를 떠나지 않았다면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때부터 기산된다(Art. 10, (1)).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미리 지정한 전자주소에서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기산되는데, 다만 수신자의 다른 전자주소로 송신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는 수신자가 그 주소에서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고,²⁵⁾ 전자적 의사표시가 그 주소로 송신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때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전자적 의사표시는 UECIC상 송신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결정된 장소에서 송 · 수신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이다.²⁶⁾

한편 동 법에서는 전자문서의 송 · 수신시기에 대하여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IPS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제6조 제1항), 아울러 작성자 또는 수신자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각각 송 ·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제6조 제3항). 또한 영업소가 복수이상인 때에는 당해 전자문서의 주된 관리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소재지에서 송 · 수신된 것으로 보고, 다만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서 송 ·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5) 이 경우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자의 전자주소에 도달한 때 수신자는 그 전자적 의사표시를 검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UECIC, Art. 10, (2).,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an electronic address designated by the addressee. The time of receipt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at another electronic address of the addressee is the time when it becomes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at that address and the addressee becomes aware that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to that address. An electronic communication is presumed to be capable of being retrieved by the addressee when it reaches the addressee’s electronic address.”

26) i) UECIC, Art. 6.,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a party’s place of business is presumed to be the location indicated by that party, unless another party demonstrates that the party making the indication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at that location. 2. If a party has not indicated a place of business and has more than one place of business, then the place of busines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s that which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to the relevant contract, having regard to the circumstances known to or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3. If a natural person does not have a place of business, reference is to be made to the person’s habitual residence. 4. A location is not a place of business merely because that is: (a) where equipment and technology supporting an information system used by a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formation of a contract are located; or (b)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may be accessed by other parties. 5. The sole fact that a party makes use of a domain name or electronic mail address connected to a specific country does not create a presumption that its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in that country.”
ii) 유의점은 UECIC Art. 10, (2)는 전자주소가 운용되는 IPS가 소재한 장소가 동 조 (3)에 의해 전자적 의사표시가 수신된 것으로 보는 장소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UECIC, Art. 10, (4)., “Para. 2 of this art. 10 applies notwithstanding that the place where the information system supporting an electronic address is located may be different from the place where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s deemed to be received under para. 3 of this art.”

송·수신시기에 대한 동 법의 규정은 UECIC와 비교하여 ‘떠난 때 또는 떠나지 않았다면 수신된 때’(UECIC)라고 하는 내용과 ‘입력된 때’(동 법)라고 하는 자구상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생각건대 전자문서의 송·수신책임에 기한 관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환언하면 IPS 또는 AMS가 개입된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관계에 있어 작성자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확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동 법에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수신확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존치해 두고는 있으나, 법률관계의 명료한 확정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UECIC 규정내용에 준한 개정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AMS 또는 IPS를 매개로 한 ‘상업적 전자문서 인증시스템’(commercial certificate systems of electronic message)의 효과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효과

통상 ‘전자적 대리인’(electronic agents)에 의제되고 있는 AMS는 전자상거래 추이에 비추어 점차 그 사용이 상례화 되고 있는데, UECIC는 AMS에 대하여 이를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위를 개시하거나 데이터 메시지 또는 그 실행에 응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화 또는 그 밖의 자동화된 수단으로서 시스템에 의하여 행위가 개시되거나 응답이 생성될 때 자연인에 의한 검토나 개입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⁷⁾

곧 AMS에 대한 UECIC의 정의는 계약체결 시 AMS의 이용과 관련, 당해 시스템과 송·수신자간 상호작용 또는 AMS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가 당해 시스템에 의한 각 단계나 성립될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거나 간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 및 집행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는 규정(Art. 12)²⁸⁾에 대한 근거규정으로서 기능한다.

다른 한편 IPS에 대해서는 동 법과는 달리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저장 기타 그 밖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지

27) UECIC, Art. 4, (g), “Automated message system means a computer program or an electronic or other automated means used to initiate an action or respond to data messages or performance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view or intervention by a natural person each time an action is initiated or a response is generated by the system.”

28) UECIC, Art. 12., “A contract formed by the interaction of an automated message system and a natural person, or by the interaction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shall not be denied validity or enforceability on the sole ground that no natural person reviewed or intervened in each of the individual actions carried out by the automated message systems or the resulting contract.”

않다. 다만 동 법에서의 내용은 ‘전자적 장치와 체계’라고 하는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 당해 개념에 대한 명확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UECIC에 비할 경우 순기능적 차원에서 진일보한 법적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송·수신자의 법적 지위

UECIC에서는 송신자(originator, 동 법상 작성자)를 전자적 의사표시의 저장 이전에 이를 직접 또는 대리인(on whose behalf)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작성한 당사자를 의미한다고 하고, 달리 수신자(addressee)에는 송신자가 전자적 의사표시를 수신하도록 의도한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다.²⁹⁾ 다만 양자 공히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중개인(intermediary)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는 배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동 법은 작성자를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 그리고 수신자를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의 상용화의 추세에 비추어 마땅히 각 당사자의 대리인의 범위를 적의 수용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앞선 전례와 같다.³⁰⁾

송·수신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동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를테면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제7조), 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제8조) 및 수신확인(제9조), 작성자와 수신자간 약정에 의한 변경(제10조) 등의 내용은 대부분 UECIC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적의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7.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과

전자상거래에 있어 전자문서의 교환 시 오류 및 착오의 처리문제는 앞서 본 AMS의 사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UECIC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AMS와 교환되는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입력 오류를 범하였고, 당해 AMS가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오류 사실을 안 직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자신이 전자적 의사표시에서 오류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 및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어떠한

29) UECIC, Art. 4., “(d) Originator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 party by whom, or on whose behal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has been sent or generated prior to storage, if any, but it does not include a party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 (e) Addressee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means a party who is intended by the originator to receive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t does not include a party acting as an intermediary with respect to that electronic communication.”

30)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 29.

물질적 이익 또는 가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오류를 범한 당해 전자적 의사표시 부분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고 명정해 두고 있다(심중석, 2009).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은 작성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송신자의 정의규정, AMS에 대한 별단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당해 전자문서에 기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기속효를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작성자의 대리인, 전자문서 인증시스템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전자적 의사표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이하 동 법과 비교하여 현재 발효 중에 있는 UECIC의 규정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UECIC의 구성체계

장 별	조문 별	규 정 내 용
Chap. I: 적용영역 (Sphere of Application)	Art.1 - Art.3	Art. 1: 적용범위(Scope of application) Art. 2: 예외(Exclusions) Art. 3: 당사자 자치권(Party autonomy)
Chap. II: 일반규정 (General Provisions)	Art.4 - Art.7	Art. 4: 정의(Definitions) Art. 5: 해석(Interpretation) Art. 6: 당사자의 위치(Location of the parties) Art. 7: 정보요건(Information requirements)
Chap. III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rt.8 - Art.14	Art. 8: 전자적 의사표시의 법적 승인 (Legal recogni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Art. 9: 형식요건(Form requirements) Art.10: 전자적 의사표시의 송·수신시기와 장소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electronic communications) Art.11: 청약의 유인(Invitations to make offers) Art.12: 계약체결시 AMS의 이용(Use of AMS for contract formation) Art.13: 계약조건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contract terms) Art.14: 전자적 의사표시의 오류(Error in electronic communications)

31) UECIC, Art. 14., “1. Where a natural person makes an input error in an electronic communication exchanged with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of another party and the automated message system does not provide the person with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error, that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has the right to withdraw the portion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in which the input error was made if: (a) The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notifies the other party of the error as soon as possible after having learned of the error and indicates that he or she made an error in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b) The person, or the party on whose behalf that person was acting, has not used or received any material benefit or value from the goods or services, if any,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2. Nothing in this article affects the application of any rule of law that may govern the consequences of any error other than as provided for in para. 1.”

Chap.IV 최종조항 (Final Provisions)	Art.15 - Art.25	Art.15: 기탁처(Depository) Art.16: 서명, 비준, 수락 또는 승인 (Signature,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Art.17: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참여 (Participation by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Art.18: 국내영역단위에서의 효력(Effect in domestic territorial units) Art.19: 적용범위의 선언(Declaration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rt.20: 다른 국제협약상 의사표시의 교환 ³²⁾ (Communications exchanged under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Art.21: 선언의 절차와 효력(Procedure and effects of declarations) Art.22: 유보(Reservations) Art.23: 발효(Entry into force) Art.24: 적용시기(Time of application) Art.25: 폐기(Denunciations)
---------------------------------------	-----------------	---

IV. 요약 및 결론

본고는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을 대상으로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내지 안정성에 기초하여 동법에 대한 법적 보완과제를 추론하여 이를 명료히 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었다.

그 내용은 현행 동법이 국제법규범과 비교하여 부각될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점과 또한 당해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 내지 보완과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동법을 위시하여 이에 비교법적 분석도구로 취한 국제법규범은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최초의

32) 동 조와 관련 UECIC 가입국이 다음 국제협약의 체결국이거나 체결국이 될 경우 당해 국제협약상 계약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련된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UECIC가 당연히 적용됨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곧 당해 협약은 i)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the 'New York' Convention : 1958), ii) '국제물품매매에서의제한기간에관한협약'(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1974), iii)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UN협약'(CISG : 1980), iv) '국제상거래에서의터미널운송업자의책임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iability of Operators of Transport Terminals in International Trade : 1991), v) '독립보증장및스탠드바이신용장에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1995), vi) '국제상거래에서수취계정채무양도에관한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 2001) 등이다(심종석, 2009).

국제협약으로서 그 지위를 표창하고 있는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UECIC)이다. 그 배경은 동 법이 UECIC에 비추어 어떠한 법적 의의를 내재하고 있고,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 있어 선도적 입법례에 걸맞게 본래의 제정취지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두었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환경에 대한 고도의 적응력을 제고하고 있는 차제에,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가 UECIC에 대한 체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내지 안정성에 기초하여 동 법에 대한 법적 보완과제를 추론할 수 있었음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자평한다. 같은 시각에서 본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실무계 뿐만 아니라 학계간 유관분야에서 후속연구에 적의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고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거래기본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첫째, 동 법의 정의규정에 있어 전자거래와 정보처리시스템(IPS) 및 동 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AMS)에 대한 적정성 여부이다. 그 내용은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 그리고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의 자구상 불일치에 따른 개념정립 및 그 부분의 실익에 대한 사항이다.

둘째,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의 충족요건과 송·수신시기와 장소에 대한 UECIC와의 상호 견련성에 관한 문제점이다. 그 골자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요건과 기준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하는 점이다. 아울러 송·수신시기와 장소에 있어서는 AMS가 개입할 경우 동 시스템이 IPS에 의제될 수 있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점이다.

셋째, 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대별에 따른 법적 실익을 담보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AMS를 정의규정으로 수용할 경우 UECIC와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어떠한 파급효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점도 부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넷째, 송·수신자의 법적 지위에 있어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과정에 있어 문제시 될 수 있는 양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제점이다. 동 법은 전자문서 외에는 달리 전자적 의사표시를 규정 내에 수용하고 있지 않은 바, 당해 논점은 UECIC와의 법적 상관관계에 있어 합목적성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로 귀결된다.

다섯째, 동 법에서는 달리 명시하고 있지 않은 자동화된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이다. UECIC에는 당해 개념 내지 법률효과를 규정 내에 수용하고 있는

차제에 있는 바, 이는 그 실익이 담보되는 전제하에서 동 법으로의 수용을 적의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2.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사항에 관하여

첫째,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의 구분은 국제상거래에 있어 법적 안정성 및 예견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용에 따른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편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전자거래의 개념과 그 범위는 각각 달리 사용되고 구분되어야 한다. 곧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있어 기업간 상거래는 이를 전자상거래의 범위로 포함하고, 달리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주체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동 법에서는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을 공히 보장하고는 있으나,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인증신청에 있어 일정한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국제법규범과 조화의 관점에서, 곧 타 법률에 위임해 둔 전자문서의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동 법의 적용범위에 기하여 당해 전자문서의 제한요건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문서의 형식요건에 기하여 UECIC상 조문내용을 참조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될 수 있는 법적 조화의 관점에서 전자문서의 등기능성에 대한 후보규정과 형식요건에 있어 일부 제한요건을 UECIC에서 수용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기초로 이를 명료히 제시할 수 있는 별단의 관련규정 신설 또는 제·개정이 요구된다.

넷째, 동 법은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에 대하여 입력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자문서의 송·수신책임에 기한 관계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하여 떠난 때 또는 떠나지 않았다면 수신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곧 UECIC 규정내용에 준한 개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순기능적 차원에서 동 법은 UECIC상 정보시스템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저장 기타 그 밖의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의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적 장치와 체계라고 하는 명료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당해 개념에 대한 명확성 및 확장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진일보한 법적 시각이라 평가된다.

여섯째, 동 법은 작성자를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 그리고 수신자를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의 상용화의 추세에 비추어 각 당사자의 대리인의 범위를 적의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동 법은 작성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송신자의 정의규정, AMS에 대한 별단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전자문서에 기한 전자적 의사표시의 기속효를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작성자의 대리인, 전자문서 인증시스템 내지 자동화된 메시지 시스템, 전자적 의사표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박문석·이우석,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개인정보통제권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 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8권 제3호, 2008.
- 서민교, “전자상거래에 관한 한·미 FTA의 평가와 향후 과제”, 『e-비즈니스연구』 제9권 2호, 국제 e-비즈니스학회, 2008.
- 심종석, “국제계약에 있어 전자적 의사표시의 이용에 관한 UN협약의 평가와 실무적 용상 유의점에 관한 고찰”, 『e-비즈니스 연구』, 제9권 제4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2008.
- 우광명, “전자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성립의 법적 문제”,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7권 제3호, 2007.
- 이병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정보제공의무”, 『2004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4.
- 최준선,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제15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1.
-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의안번호1189), 2001. 11.
-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산자위, 2001. 12.
-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산자위, 2005. 02.
-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심사보고서’, 산자위, 2007. 04.
- ‘전자거래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8222), 산자위, 2008. 02.
- 北川善太郎, “システム契約 - 情報化社会におけるしい契約類型”, NBL No. 393. 2002.
- EU,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2000)
- ,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0), L 178/7.
-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I, E.
- ‘Guide to enactment of the UNCITRAL Model Law’, I, E. F.
- J.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OECD, 'Guideline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Electronic Commerce'(1999)

_____, 'Guideline for Cryptography Policy'(1997)

_____, 'Guideline for the Security of Information Systems'(1992)

_____, 'Guideline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1980)

Steven H. Gifis, *Law Dictionary*, 4th ed., Barron's Educational Series, 1996.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1996)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Annex I .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 29.

UN, 'General Assembly A/CN.9/WG.IV/WP.95', paras. 75, 81.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1998)